하루의 행복, 부산-김해 경전철이 함께합니다.

『부산-김해경전철 전동차 청소용역 』

계약특수조건

2022. 12.

부산-김해경전철주식회사

(차량처)

전동차청소용역 계약특수조건

부산-김해경전철(주)(이하 "발주자"라 한다.) 전동차 청소용역의 과업대상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용역수행자(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다음 내용에 따라 계약을 이행한다.

제1조(목적)

전동차 청소용역에 관한 적정한 용역수행 과업을 정하여 전동차의 청결한 유지관리 및 방역소독으로 부산김해경전철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대상 및 계약기간)

"계약상대자"는 시행해야 할 청소의 대상 및 범위는 붙임 "전동차 청소용역 과업지시서와 같다.

1. 계약기간은 2023.01.01부터 2023.12.31(1년)까지로 한다.
2. "발주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차기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일정기간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예정물량)

청소 종류별	예정물량(편성)	비 고
소 청 소	8,016	입 고 시
중 청 소	1,200	주 1 회
대 청 소	300	월 1 회
방역소독	8,016	입 고 시

제4조(물량 조정)

① 제3조의 전동차 청소물량은 예정물량으로써 전동차 운행계획(DIA) 및 검사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실제 시행물량이 예정물량보다 감소되거나 증가 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청소물량은 별도의 조치 없이 실제 시행한 물량으로 조정된 것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② 제①항 이외에도 "발주자"는 비정기적인 특별청소 등 필요한 경우 예정물량을 초과하여 작업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5조(대가의 청구 및 지급)

① 계약상의 청소물량은 예정물량이므로 실제 청소 시행 후 "발주자"의 통합운영정보시스템 상의 등록된 물량(편성)에 대하여 하기 적용기준에 의거 예정물량대비 계약된 금액을 월별 정산한다.

- 대가지급 적용기준

달성 목표	대가지급	비고
90%~110%	100%지급	
90% 이하	당해 월 청소대가 총액의 3%이내 패널티	"발주자"의 전동차 운용상 부득이한 경우로 인해 물량 축소분은 제외함

② "계약상대자"는 전동차 청소의 월별 시행실적에 대한 대가지급을 다음달 5일까지 검사조서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대금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검수 완료 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발주자"로부터 받은 용역대금을 용역원의 임금지급에 최우선으로 사용하여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용역업무 착수 및 시행)

① 용역업무 착수는 "발주자"의 전동차 운용계획에 의거 시행하되 "발주자"의 착수요청에 따라 시행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업무 계약업무 시행과 관련하여 업무계획서를 용역업무 수행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 2항에 대한 제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인력운영계획(인력확보 및 배치계획)
2. 세부 청소계획 수립, 작업, 관리에 대한 사항

3. 소요물품(장비포함) 확보 및 사용계획
4. 법정 및 자체안전 교육계획
5. 긴급(위급) 상황 발생시 조치사항 등

④ 업무계획서 및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업무를 시행하여야 하며, 신기술 도입 등으로 업무개선 또는 변경이 필요시 적극 추진하되 사전에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대리인 권리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청소업무 착수 전에 청소책임자를 선임하고 그 명단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동이 있을 때 또한 같다.

② "계약상대자"가 선임한 청소책임자는 계약업무 이행에 있어 다음의 각호의 해당하는 임무를 맡게 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용역원의 노무관리 및 안전관리 등 작업상의 지휘명령
2.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발주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3. "발주자"의 계약서에 따른 주문사항의 업무처리
4. "계약상대자"의 용역원의 규율.질서유지 및 기타 계약업무에 관한 사항

제8조(시설물의 사용)

① "발주자"는 효율적인 전동차 청소작업 수행을 위하여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사무실, 창고, 대기실, 조명 및 작업전력, 용수, 기설치된 냉·난방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설물 사용에 대한 부분은 사전계약체결 후 사용토록 한다 단, 집기 및 비품일체는 "계약상대자"가 준비하여야 한다.

② 청소작업에 필요한 시설물 및 부대설비는 현재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것은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에게 사용요청을 한 후 이를 승인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중인 시설물 개선, 증설 등과 승객의 안전과 "계약상대자"의 편의를 도모하기위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고 시설물 유지관리 및 에

너지 절감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 및 사고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관리교육 등 예방활동은 물론,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전동차청소작업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비롯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화재, 기타 인적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게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구류를 지급하고 용역업무 수행 시 관계법령(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용역원은 차량기지 내 선로를 무단횡단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당일 업무수행 전 용역원에 대한 안전수칙 준수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작업 및 휴식장소 등을 "발주자"에게 요청하여 지정한 장소에서만 작업 및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에 있어 낙하 및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을 실시할 경우 반드시 안전대책을 강구한 후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⑦ 청소 작업시 전동차가 이동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차 후 승.하차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용역업무 수행에 있어 상기 1~7항 및 제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또는 이행치 아니하여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⑨ "계약상대자"는 귀책사유로 인해 "발주자"에게 인적, 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⑩ "계약상대자"는 작업도중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⑪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의 용역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열차운행이 중단 또는 지연되어 발생한 "발주자"의 운수수입 등 손해금에 대해

"계약상대자"는 배상 책임을 진다.

제10조(노무관리 및 후생복지)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한 사용자로서 근로관련 법령상의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용역원을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상대자" 에게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와 무관한 "계약상대자" 내부의 경영 및 노사문제 등으로 "계약상대자"의 용역원이 "발주자"를 상대로 한 항의 및 집단농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무관리를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가 부당한 행위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 ③항의 사유로 "발주자"에 대하여 업무방해 및 시설점거 등 불법행위 발생시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⑤ 도급계약은 경영권, 인사권 등이 독립되어 "계약상대자"가 독립적으로 시행하며, "발주자"로부터 부당한 요청이 있을시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

⑥ 용역원에 대한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수준으로 보장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도급계약 체결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원에 대한 고용을 승계하여야 하며 분기별 임금지급명세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보상보험 가입
2. 건강보험가입
3. 노인장기요양보험
4. 임금채권보장보험 가입

5. 고용보험 가입
6. 국민연금
7. 피복지급(피복 및 작업화)
8. 건강진단실시

제11조(노동법상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전동차 청소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한 용역원의 행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작업환경측정 및 보호장비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사회보험법령 등 용역원 권익 및 보호를 위한 법령상의 책임을 지고 노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복장 및 용모)

① "계약상대자"는 수탁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발주자"의 이용승객에게 불쾌감이 없도록 자체 용역원 복무규정을 제정, 용역원으로 하여금 작업복 착용 및 명찰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원이 고객응대 시 항상 단정한 복장, 두발 및 용모 등 바른 품행으로 친절한 접객서비스로 고객에게 응대토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의무 양도 및 하도급 금지)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서면승인 없이 계약상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청소용역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 시킬 수 없다.

제14조(계약조건 변경)

① "발주자"의 용역업무에 대한 감독기관의 지적 및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 등 계약내용을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용역계약에 따르며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발주자" 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품목조정률 방법으로 한다.

제15조(인수인계)

본 용역을 수급한 계약상대자와 전회 계약상대자가 다른 경우에는 계약

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소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하며, 본 용역과업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금지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발주자"의 전동차 운행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사전 허가 없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3. 경전철 이용승객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4. 전동차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금품을 "발주자"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5. 전동차 내.외부의 각종 기기에 충격을 주거나 이물질 등을 투입하여 손상케 하는 행위
6. 차량기지 내 시설 및 설비를 임의로 훼손 또는 파괴하는 행위
7.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차량기지 내 시설.설비현황 및 경영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
8. 작업장 내 청소용품 등을 방치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
9. 계약체결 전.후를 막론하고 확실한 근거 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발주자"를 중상모략 비방하여 "발주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제17조(계약 위반에 대한 조치)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1. 시정 : 청소품질 및 접객서비스 미흡시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하여 시행
2. 주의 : 시정 요구 미이행시 및 계약내용 위반시 서면에 의하여 시행한다.
3. 경고 : 주의 3회이상 누적시 및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에 의한 계약위반시 서면에 의하여 시행한다.

제18조(계약해지)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최고

후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제17조 1호의 경고3회 이상 누적되어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청소용역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계약상대자"의 노사분규 등 내부사정으로 "발주자"에게 업무방해 및 전동차 운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 당사자간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쌍방이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발주자"가 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청소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상당기간 "계약상대자"는 계속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발주자"가 부담한다.

제19조(조문의 해석)

계약서의 각 조항 및 기타 사항에 대한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20조(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을 신의와 성실로서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발주자", "계약상대자" 각 1통씩 보관한다.

제21조 (청소원의 고용)

계약상대자는 전동차 청소 인원을 전체(청소반장 포함 총8명)의 고용하여 전동차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